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16

발의연월일: 2025. 2. 10.

발 의 자:윤준병·문정복·박희승

정동영 · 김태선 · 이춘석

서영교 · 장철민 · 신영대

문금주 · 김윤덕 · 조계원

김영화 · 민병덕 · 박홍배

허 영·김우영 의원
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,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.7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(1970년)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양육비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책 마련이시급한 상황임. 그러나 현행법은 육아에 필수적인 용품 중 영유아용기저귀와 분유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개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외에도 자녀 양육에 필수적 인 영유아용 위생용품과 식품, 수유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유 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제1항제21호 및 제27조제16호 신설).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
 - 가. 기저귀, 물티슈, 비누, 보습제 등 위생용품
 - 나. 분유, 모유 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, 이유식 등 육아에 필요한 식품
 - 다. 젖병, 젖꼭지, 유축기, 수유쿠션 등 수유용품
- 라. 가목에서 다목까지 외에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용품 제27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
 - 가. 기저귀, 물티슈, 비누, 보습제 등 위생용품
 - 나. 분유, 모유 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, 이유식 등 육아에 필요한 식품
 - 다. 젖병, 젖꼭지, 유축기, 수유쿠션 등 수유용품
 - 라. 가목에서 다목까지 외에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용품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재화의 수입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
1항제21호 및 제27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
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
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	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
대한 면세) ① 다음 각 호의	대한 면세) ①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	
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	
1. ~ 20. (생 략)	1. ~ 20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2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</u>
	해당하는 영유아용품으로서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
	가. 기저귀, 물티슈, 비누, 보
	습제 등 위생용품
	<u>나. 분유, 모유 대용으로 사</u>
	용하는 식품, 이유식 등
	육아에 필요한 식품
	다. 젖병, 젖꼭지, 유축기, 수
	유쿠션 등 수유용품
	라. 가목에서 다목까지 외에
	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
	필요한 용품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7조(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)	제27조(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	
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	
면제한다.	

1. ~ 15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1. ~ 15. (현행과 같음)

1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가. 기저귀, 물티슈, 비누, 보습제 등 위생용품 나. 분유, 모유 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, 이유식 등 육아에 필요한 식품 다. 젖병, 젖꼭지, 유축기, 수유쿠션 등 수유용품라. 가목에서 다목까지 외에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용품